

결 격 사 유 확 인 서

○ 성 명 :

○ 생 년 월 일 :

본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에 의한 결격사유를 확인 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.

1.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
2. 정당법에 의한 당원이 아니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지 3년이 경과됨
3.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항이 없음
 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함
5.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, 통신, 법률,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함

※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은 선거사무소,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, 고문단, 특보단,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경우로 봄

6.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함

2015년 월 일

위 확인자 :

(서명 또는 날인)

방송통신위원회 귀중